##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9

발의연월일: 2024. 6. 14.

발 의 자: 송옥주·정성호·윤종군

홍기원 • 백승아 • 이재관

한민수 항명선 • 박 정

이병진 • 이원택 • 한정애

용혜인 · 김성환 · 이수진

박해철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도시가스와 같은 적절한 에너지원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여전히 취약한 환경에 방치된 일부 농어촌지역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역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공급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특별법」의 시행에 맞추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지역단위 내 효과적인 에너지 생산 및 소비를 위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사항에 에너지 취약

지역 대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공급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더 효과적인 에너지 정책이 수립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의2·제5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2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에너지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의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지역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②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2의2. 에너지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5의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		
	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분		
	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		
	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		
	<u> ठ</u> ो-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